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와 노동자 인권
(Globalization and Workers' Human Rights in East Asia)

홍성우*1)

(Seong-Woo Hong)

조 담**

(Dam Cho)

이규용***

(Kyu Yong Lee)

연락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홍 성 우

(062) 530-1547 swhong@chonnam.ac.kr

1)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 98 - 005 - C00347)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들의 책임입니다.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최근 국제화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자유로운 무역, 자본의 국제적 이동, 다국적기업의 세력 증대를 통한 국제경제 의존도의 획기적인 증가가 핵심내용으로 개별국가의 역할과 정책결정 자율성이 점점 감소한다.¹⁾ 그러나 상품과 자본이동의 자유로움에 비해 노동의 국제간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고, 국제화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태와 인권은 각국이 큰 차이를 의연히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5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화가 노동자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 지역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1980년대 이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박래영외 1998, 3쪽) 특히 이들 국가들은 80년대 말 이후 한국기업들의 주요 직접투자 대상지역이다. 둘째, 이들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서 국제화가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개방화와 공업화가 일찍이 이루어져 국민소득수준이 높고, 1990년대 취업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이다. 태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산업화가 늦어 취업자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며 제조업은 10%대로 국민소득은 3천 달러 미만이다.

국제화와 노동자 권리의 관계는 무역연계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Block et al., 2001). 국제화가 국민소득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노동자 권리, 식품의 안전성, 환경 등 다른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화를 꺼려한다(Frankel 2000). 1999년 WTO 시애틀 회의가 자유무역의 노동기준에 대한 영향에 저항하는 시위로 중단된 것은 이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노동자들은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확대가 낮은 노동기준을 가진 저임금국가의 생산품 수입 및 이들 국가로의 자본이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진국 정부들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차이가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오고 노동기준의 하향경주(a race to the bottom)를 야기시키므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한다(Lee 1997; OECD 1996).

1) 박영범(1998; 1, 173-4쪽). '세계화'는 경제활동의 세계적 통합경향을 의미하는 것(정성진, 1999, 2쪽)으로 이 글에서는 통합경향보다는 의존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국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연계 주장이 선진국의 보호주의이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주권침해이고 아시아의 가치와(Bauer and Bell, 1999)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노동기준 약화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부족에 시달리는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기준을 양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²⁾ 한편 연계를 반대하는 자유무역 옹호 경제학자들은 각국의 노동기준 차이는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국제화가 개발도상국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WTO로부터 이 문제를 넘겨받은 ILO(1997)는 최저 노동기준 준수를 전제하면서도 노동조건과 보호의 수준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경제발전과 노동기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경제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화는 저개발국 노동자인권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현지 기업보다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다. ILO 등 국제기구, 수입국 및 투자국 노동조합 및 소비자들의 인권개선 압력은 자본수입국 노동기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국제화에 의한 경제발전은 소득수준을 증가시키고 국내노동자들의 인권보장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노동자인권 개선이 효율적이라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국제화는 노동자인권에 기회와 제약(안병영 2000, 62-76쪽)을 동시에 준다. 이 글은 국제화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노동자 인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향경주의 주장과 달리 국제화가 개발도상국 노동자 인권을 개선시킨다면 선진국들의 연계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낮은 노동기준을 이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렵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문제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하 이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II에서는 분석대상국들의 국제화 시기 및 정도를 알아보고, III에서 노동자 인권의 개념과 국제화가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IV에서 각종 지표를 통해 노동자인권의 변화를 검토하고, V에서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2) 노동기준이 직접투자 대상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려사항이며(OECD 1996), 노동기준은 비교우위에 영향을 준다(Rodrik 1996).

II. 국제화의 진전

1. 무역 자유화

1960년대초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거의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몇년후 경제개발에 나섰다.(홍성우 외 2000 참조) 말레이시아는 70년대에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시도하였고, 80년대초에는 중공업 수입대체단계에 들어섰다³⁾. 타일랜드는 3차경제개발계획(1972-76년)에서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시작했고 5차 계획기(1982-86년)에 무역자유화 조치를 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국제수지적자가 증가하여 수입대체 공업화가 동시에 추진되었고, 무역정책이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비교적 늦은 인도네시아는 1986년 수입대체적 공업화에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필리핀은 1970년대초 수출가공지역이 설립되었으나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Tongzon 1998, p.42)

수입대체단계에는 1차산품, 수출지향적 공업화단계에는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였고,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의존도가 상승하였다. 관세 및 수량적 제한 등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시기는 태국이 1982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1985년, 말레이시아가 1986년이고, 1994년을 기준으로 무역자유화를 '상대적으로 개방적', '약간 제한적', '제한적'으로 평가할 때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는 '약간 제한적'이다.(OECD 1996, pp.129-130)

<표1>은 기간별 연평균 무역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계무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싱가포르와 싱가포르를 통한 교역량이 큰 말레이시아는 처음부터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60년대에 30%대였다.⁴⁾ 무역의존도가 300%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네 나라는 이후 20여년에 걸쳐 80년대 전반까지 10-15%p 정도 상승하다가 특히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전반에 걸쳐 무역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전반을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는 63.4%p, 필리핀은 32.3%p, 타일랜드는 21.8%p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에 3.4%p 상승에 그쳤지만 90년대말 급상승

3) 말레이시아는 70년대에 이미 수출지향 공업화단계에 들어섰으나 80년대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선택적 2차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한다. (大野健一 1997, p. 264)

4) 각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산업구조가 상이하므로 무역의존도 수치만으로 국제화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국별로는 무역의존도 상승이 국제화 심화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였다.

<표1> 각국의 무역의존도¹⁾

(단위: %)

	연평균							1996	1997	1998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81-85	1986-90	1991-95			
싱가폴	266.0	214.5	224.6	310.2	303.2	300.0	279.7	276.4	267.3	250.4
말레이시아	94.2	86.5	83.7	98.9	108.1	127.0	171.5	183.2	188.3	210.7
인도네시아	-	27.9	40.2	45.9	48.4	45.2	51.8	52.3	56.4	93.5
필리핀	37.3	38.9	39.5	47.7	49.2	64.4	81.5	84.4	93.4	97.0
타일랜드	31.1	34.2	37.6	43.8	48.4	55.2	70.2	89.8	108.4	114.6

주 1) 수출입/GDP.

자료: <http://www.adb.org> 및 IMF, IFS, 1999.6.

2. 자본 자유화

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증대를 통하여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생산기지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 시기 국제화의 성격을 특징짓는다.

이들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투자촉진법을 정비하여 민족주의적 이유로 기피해왔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으며, 1차산품 생산증대와 수입대체 공업화를 통해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중화학공업 관련산업에 대한 소득세와 원자재수입관세의 경감, 제품의 보호 관세 신설, 외국에의 이자 및 배당송금 보증 등 특혜가 주어졌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자유무역지구 설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전기·전자산업, 섬유산업 등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가공단지 또는 자유무역지구 등과 같은 한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의 투자능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지분비율, 국산화율, 외국인고용비율, 최종제품의 수출비중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주어졌다.

1980년대 중반 2차 오일쇼크 이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으로 전환하는 장기대책이 수립되었다.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가 먼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장려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현지화 정책 등 여러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이

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싱가폴은 70년대초부터 자본 집약적인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에 이미 제조업 노동자의 58%, 제조업 자본지출의 72%에 이르렀고, 70년대 후반 저임금정책에 기초한 개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단계에 이르러 다른 나라들과 구분된다. 1980년대 싱가폴은 중계무역항 및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은 외부요인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에 의한 엔고, 일본과 한국, 대만 등 NICs의 노동비용 상승, 대만의 안보불안, 1997년 홍콩반환 등이 곧 그것이다.(Tonzon 1998, pp.28-32)

<표2>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본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다. 80년대 전반에 비해 80년대 후반 및 90년대에 들어 그 규모가 현격하게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전반에 10억달러 정도였던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90년대 전반에 각각 25억 달러 및 4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1-3억 달러였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는 각각 21억 달러, 13억 달러, 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그 규모는 확대되었다.

<표2>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¹⁾

(단위: 백만달러)

	연평균			1996	1997	1998	1999
	1981-85	1986-90	1991-95				
싱가폴	1,215	2,683	2,536	2,050	-774	7,018	3,042
말레이시아	1,083	1,126	4,900	5,369	7,055	2,758	3,083
인도네시아	236	599	2,101	5,594	4,525	-356	-3,270
필리핀	278	1,131	1,290	1,406	3,365	6,999	5,301
타일랜드	131	516	944	1,338	1,113	1,592	871

주 1) 국제수지 기준.

자료: <http://www.adb.org>에서 필자가 계산.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각국의 경제성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가는 <표3>을 통해 알 수 있다. 총투자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후반 및 90년대 전반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FDI 비중이 높았던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전반 연평균 17.4%, 10.8%에서 90년대 전반에 각각 23.3%, 21.3%로 상승하였다. FDI 비중이 낮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도 0.9%, 0.8%. 3.0%에서 각각 4.3%, 7.4%, 3.7%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상승하였

다.

<표3>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¹⁾/총고정자본형성

(단위: %)

	연평균					1996	1997	1998
	1971-75	1976-80	1981-85	1986-90	1991-95			
싱가폴	15.0	16.6	17.4	35.0	23.3	25.6	22.1	17.6
말레이시아	15.2	11.9	10.8	11.7	21.3	17.0	15.1	13.9
인도네시아	4.6	2.4	0.9	2.1	4.3	8.9	6.8	-0.8
필리핀	1.0	0.9	0.8	6.7	7.4	7.8	6.2	12.8
타일랜드	3.0	1.5	3.0	6.5	3.7	3.2	7.8	25.1

주 1) 해외직접투자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1997, 2000.(<http://www.unctad.org>).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들 국가들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국제화가 계속 진전되어왔고,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화가 노동자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자.

III. 노동자 인권의 정의

1. 핵심노동기준

인권의 정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보편적인 정의는 UN 인권선언에 표현되어 있고 시민권,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등을 포함한다.(Cingranelli 1988, p.139) 노동자 인권은 노동자의 노동과 연관된 인권이다. ILO의 협약과 권고 즉 국제노동기준은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⁵⁾ Portes(1994)에 의하면 노동기준은 기본권(아동노동 이용·비자발적 예속·육체적 강제로부터의 권리), 생존권(생계임금에 대한 권리·산재보상·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권리), 안전권(자의적인 해고로부터의 보호, 퇴직보상, 유족보상), 시민권(결사의 자유, 집단적 대표권, 고충의 자유로운 표현권) 등 크게 4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중 기본이 되는 핵심노동기준이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간의 논의와 협상 끝에 ILO는 1998년 6월 18일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기본권은 크게 네가지 범주, 즉 결사의 자

5) 인권과 국제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Valticos(1998) 참조.

유 및 단체교섭권의 유효한 인정(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일소(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협약),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최악형태의 아동노동협약),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 제거(제100호 동일보수협약,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협약)이며 ILO의 8개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⁶⁾ 이 글에서는 ILO의 핵심노동기준을 중심으로 노동자 인권을 논의하기로 한다.⁷⁾

2. 노동기준 하향경쟁

국제화의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주장은 노동자 인권이 먼저 개선된 선진국에 의해 제기되어왔는데 역사적으로는 18세기말 루이 16세 재무장관의 낮은 노동기준 비교우위 주장, 1919년 ILO 설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에는 1970년대 장기 불황을 맞으면서 관심이 제고되었다.(Lee 1997; Block et al. 2001; OECD 1996; 박영범외 1994b; 박영범 1998)

무역자유화로 국제적 경쟁이 심해지면 각국은 노동기준의 하향경쟁을 하게되므로 핵심노동기준 준수를 무역에 연계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개발도상국은 낮은 노동기준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선진국 시장을 침범한다. 이것은 선진국 노동기준에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고 미숙련노동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외자유치를 위해 노동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이들 저노동기준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선진국의 고용이 축소되므로 노동기준은 하향경쟁을 하게된다. OECD(1996)는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저개발국들의 주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며, 높은 노동기준국들이 오히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였으므로 국제노동기준 강제가 쌍방에 모두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등의 이러한 주장은 위장된 보호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UR이나 WTO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ILO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모든 노동기준이 하향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노동기준 중 차별 제거, 강제노동 일소는 경제 전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차별의 관습이나 강제노

6) 핵심노동기준의 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창훈(2000, pp. 72-79)과 Kellerson(1998) 참조.

7) 임금의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자 인권 개선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한다. 분석대상국들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동안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부표1 참조) 그러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태 개선이 곧 핵심노동기준들을 기준으로 본 노동자 인권 개선을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을 사용하는 개별기업의 이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경제발전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녀 임금차별이 존재할 경우 남녀의 임금 비율이 각각의 한계생산물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므로 임금차별은 축소될 것이다.(OECD, 1996, pp.253-258) 고용차별도 마찬가지이다. 외자기업과 수출제조업에는 여성노동의 비중이 높다. 국제화에 의한 여성노동수요 증가는 고용차별을 감소시키며, 상대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옴으로써 임금차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는 아동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나라와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병존할 경우 금지하는 나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시비용이 드는 반면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임금이 낮아 국제경쟁에서 유리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아동노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은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고 특히 장기에는 인적자본축적을 저해하므로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 또한 아동노동 중단은 사치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제화에 의한 경제발전으로 다른 소득이 증가하면 아동노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asu, 1999, pp.1113-4; OECD, 1996, p.258)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효율성을 증가시킬지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국제화가 이 노동기준을 개선할지 알 수 없다. 우선 투자유치국의 자원배분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자. 결사의 자유가 있고 기업 1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기업 2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자.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들은 비조합원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의 존재는 기업 1의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자. 기업 1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⁸⁾

$$\begin{aligned} & \min wuL + rK \\ & s. t. f(eL, K) = y \end{aligned}$$

여기서 u 는 노조임금 프리미엄, e 는 노조의 생산성 영향
기업 1의 비용최소화를 위한 1계조건은

$$\frac{wu/e}{r} = \frac{f_L}{f_K}$$

한편 기업 2의 비용최소화 1계조건은

8) OECD(1996, p.259)를 약간 변형시킨 모형이다.

$$\frac{w}{r} = \frac{f_L}{f_K}$$

$e > 1$ 이면 사회전체적인 효율성이 증대되며 $\frac{u}{e} = 1$ 이면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Freeman & Medoff(1984)에 의하면 노조에 의한 생산성향상은 노조의 목소리효과에 의한 이직율 하락에 의해 달성된다. 이직율 하락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채용비용과 훈련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노동조합은 목소리가 작아서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산업화 정도가 낮고 잠재실업자가 많아 채용비용이 크지 않고, 단순작업이 많아서 훈련비용도 미미하여 노조에 의한 생산성 상승효과도 적을 것이다.

더구나 위의 모형은 자본 부족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제약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제한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시킨다면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노동비용이 직접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느정도 중요한가에는 논란이 있지만(OECD 1996, p.148)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이 독점효과에 의해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명확하고 생산성 향상효과는 불분명하므로 저개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이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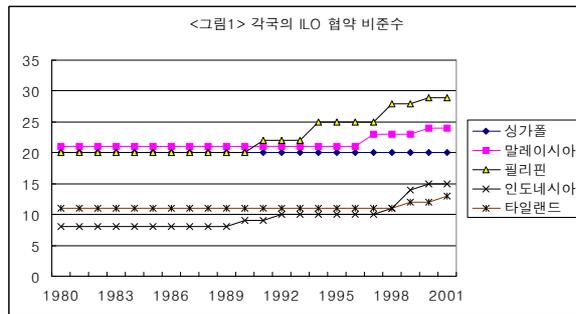
그러나 국제화에 의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발언권이 증대된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노동기준, 민주화 요구를(Verma, 1995)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다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개선될 것이다.

IV. 노동자인권의 변화

1. ILO협약 비준

이제 국제화와 함께 분석대상국들의 핵심노동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ILO협약 비준은 어떤 국가가 그 기준을 준수할 의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협약비준 여부가 노동자 인권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가간 비교에서 협약비준이 반드시 높은 노동기준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Rodrik 1996, pp. 48-9) 어떤 국가에서 새로 협약에 비준했다면 그것은 노동기준의 개선의지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은 비준된 협약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만 동기간 동안 20개로 일정하고 나머지 4개국은 90년대 전반 이후 비준이 증가하고 있어서 국제화 기간동안 노동기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기간동안 비준협약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필리핀으로 20개에서 29개로 되었으며, 다음이 인도네시아로 8개에서 15개로, 말레이시아는 21개에서 24개로, 타일랜드는 11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다.



<표4>는 8개 핵심노동기준 협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연도를 보여준다. 국제화 기간에 차별관련 협약 100호는 2개국에서 4개국으로, 111호는 1개국에서 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강제노동 관련협약은 29호가 4개국으로 그대로 있고 105호가 2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아동노동관련 협약은 138호가 비준국이 없다가 3개국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 제정된 182호는 4개국이 곧 비준하였다. 한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련 협약은 87호가 1개국에서 2개국으로 증가하고, 98호가 4개국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국제화 기간동안 핵심노동기준 협약비준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노동기준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4> 각국의 ILO 핵심노동기준 협약 비준 연도

협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차별	100. 남녀 평등보수, 1951		1958	1999	1997	1953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 1958		1999			1960
강제노동	29. 강제노동, 1930	1965	1950	1969	1957	
	105. 강제근로의 폐지, 1957	1965 ¹⁾	1999	1969	1958 ¹⁾	1960
아동노동	138. 취업의 최저연령, 1973		1999		1997	1998
	182. 아동노동의 최악 형태, 1999		2000	2001	2000	2000
결사의 자유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1948		1998			1953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1949	1965	1957		1961	1953

주: 1) 1980년 이전에 실효.

자료: ILO, ILOLEX, 2001.

이를 나라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3개에서 8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필리핀이 5

개에서 7개로, 말레이시아가 2개에서 5개로, 타일랜드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다. 유일하게 싱가포르의 변화가 없이 2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 87호 협약에 대해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1953년, 1998년 비준함으로써 나머지 국가들은 모든 노동기준의 기초가 되는 결사의 자유보장의지가 약함을 보여준다.

2. 여성차별

국제화는 여성고용 비중을 증대시켰다. <표5>에서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970년 전세계적으로 0.6이었고 분석대상국들은 타일랜드를 제외하고 0.3-0.5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8년 전세계가 0.7로 0.1p 상승한 반면 이들 지역은 모두 0.6 이상으로 0.0-0.3p 씩 상승하였다.

<표5> 경제활동인구 및 문자해독 성별 차이

	경제활동인구 (여성/남성)		문자해독 비율(남성-여성)	
	1970	1998	1970	1998
싱가폴	0.3	0.6	26	8
말레이시아	0.4	0.6	24	9
인도네시아	0.4	0.7	25	11
필리핀	0.5	0.6	4	1
타일랜드	0.9	0.9	15	4
전세계	0.6	0.7	21	14

자료: Worldbank, 200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ww.worldbank.org>.

이와같이 이들 지역의 여성고용이 증가한 것은 국제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수출지향적 국가들의 여성고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이다. 아시아 국가 평균으로 수출가공지역(EPZ) 노동력의 70% 이상이 여성이고⁹⁾, 여성고용이 유리한 것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내수 제조업에도 확대되었다.(Ghosh 1999, p.22) 1997년 EPZ는 아시아 225개로 그 중 개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중국 124개, 필리핀 35개, 인도네시아 26개이었다.(ILO 1998)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직된 산업뿐 아니라 수출 및 내수용 경공업의 선대제에도 여성이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계약직 노동에서 여성의 큰 증가가 있었고, 수출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여성 선호도가 높다. 여성고용증가 경향은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력 필요성의 결과이다. 즉 국제화는 양호한 조건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고용차별을 감소시킨 셈이다.

아시아 지역의 성별임금격차는 다른 지역 개발도상국들보다 컸다. 그 격차는 순수

9) 섬유, 전자조립에서는 90% 이상이 여성이다.(ILO 1998)

한 임금격차와 직종의 성별 분할 및 승진차별에서 결과된다. 인도네시아 방직공장의 정비부서에 근무하는 남성은 방직 여성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관리직에 근무하는 여성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노동공급이 부족한 경제의 경우 발생한다. Standing(1992)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여성생산직노동자비율과 고위 사무직 여성화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Ghosh 1999, p.30)

<표6>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말까지 남녀 임금격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10년간에 약 5%p 축소되었고, 말레이시아는 12년간 약 13%p 축소되었다. 태일랜드의 경우 자료가 짧지만 역시 축소경향이 보인다. 국제화에 의해 여성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격차는 축소된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국제화로 여성노동수요가 증가하여왔고, 둘째 국제화에 의한 소득증가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5>에서 보듯이 남녀 문자해독자 비율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중등학교 취학률도 남녀간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표7>참조) 물론 임금격차 축소자체가 성차별 감소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은 생산성의 반영이고 여성의 생산성이 더 급속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제화도 위의 과정을 통하여 격차축소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6> 남녀 임금격차 추이(제조업)(남자=100)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일랜드	필리핀
1985	-	49.3	-	-
1986	-	47.4	-	-
1987	-	47.9	-	-
1988	-	46.3	-	-
1989	54.0	48.6	-	-
1990	54.7	50.1	-	-
1991	55.7	52.0	63.8	-
1992	56.0	53.8	64.5	-
1993	57.1	56.6	69.2	76.2
1994	57.2	58.3	71.4	74.7
1995	58.3	57.9	68.2	74.3
1996	59.5	62.7	-	-
1997	60.4	62.9	-	-
1998	57.9	-	-	-
1999	59.3	-	-	-

자료: ILO, *Labour Statistics Database*, 2001.

이상에서 보았듯이 국제노동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국제화기간 동안 예상대로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은 감소하였거나 적어도 심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아동노동

ILO 138호 협약에 의하면 노동자의 연령은 15세를 초과해야 한다. 아동노동의 상태에 대한 공식자료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나라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므로 불법적인 사용이 있더라도 보고되지 않거나 축소 보고된다. 최초로 국제 데이터를 집계한 Ashagrie에 의하면 15세 미만 아동노동자수는 1990년 78,516천명이고 이 중 아시아에 56,784천명이 있다. 분석대상인 동남아시아 아동노동은 1980년 6,518천명, 1985년 6,079천명, 1990년 5,587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이 지역의 아동노동감소는 국제화에 따른 경제성장, 기술변화, 성인노동시장조건개선, 공평한 학교교육 덕분이다.(Basu 1999)

학교교육이 아동노동과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의무교육은 아동노동을 제한하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학교교육의 증가는 아동노동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 기간 동안 각국은 의무교육년수를 연장하거나 교육년수 연장을 적극 권장하였다. 각국의 의무교육년수는 필리핀 6년, 인도네시아 9년(6년에서 1994년부터 9년으로 연장), 태국 9년(6년에서 99년 9월부터 9년으로 연장)이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의무교육이 없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학교까지 무료교육이고(Aminuddin 1999, p.47) 11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¹⁰⁾ 교육비가 저렴하여 도시지역 취학률이 높다.

10) 법률상의 근거로는 Education Act(1961)에 자발적 교육(voluntary education)을 채택하였으며, 동법 1969년 개정법에서는 사립 대학 및 college의 교육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국대사관 제공)

<표7> 초등 및 중등학교 취학률

		1975		1980		1985		1990		199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학교 취학률	싱가폴	113	107	109	106	117	113	105	102	95	93
	말레이시아	97	92	93	92	101	100	94	94	101	101
	인도네시아	94	78	115	100	120	114	117	114	115	110
	필리핀	-	-	108	107	136	129	113	109	115	113
	타일랜드	87	80	100	97	100	97	100	98	97	98
중등학교 취학률	싱가폴	51	52	60	60	61	64	71	66	69	71
	말레이시아	53	39	50	46	53	53	55	58	59	69
	인도네시아	25	15	35	23	50	41	48	40	55	48
	필리핀	-	-	69	60	64	65	74	73	77	78
	타일랜드	28	22	30	28	30	28	31	30	38	37

자료: <http://unescostat.unesco.org> 및 통계청, 『APEC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0.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취학률을 통하여 아동노동의 변화를 유추해보자. 국제화가 진전된 기간동안 초등학교 취학률은 모두 100%에 가깝다. 13세 이상의 중등학교 취학률은 나라별, 성별로 다르지만 1980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자가 50% 이상이고 인도네시아, 타일랜드는 30%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6년 필리핀 77%, 싱가포르 69%말레이시아 59%, 타일랜드 38%로 모두 10%p 가깝게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는 55%로 20%p나 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원래 진학률이 낮았으므로 그 상승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¹¹⁾

말레이시아의 경우 아동노동(14세 미만) 및 청소년노동(14-15세)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휴게시간, 작업내용 등에서 일정한 제한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크게 감소하였다.¹²⁾

결국 이 기간 동안 취학률의 높은 상승은 아동노동의 감소를 추측하게 해준다. 아동노동은 노동비용을 낮추므로 국제화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성인노동시장조건이 개선되고 외부성과 사치재의 성격에 의해 학교교육이 증가함으로써 아동노동은 감소하여왔다.

11) ILO 협약 준수여부를 이용하여 지수화한 Cuyvers & Rayp(1998)에 의하면 1997년 싱가포르 1, 필리핀 0.92, 인도네시아 0.91, 타일랜드 0.85로 중등취학률이 현저히 낮은 타일랜드가 낮게 나타나있다. (한창훈 2000,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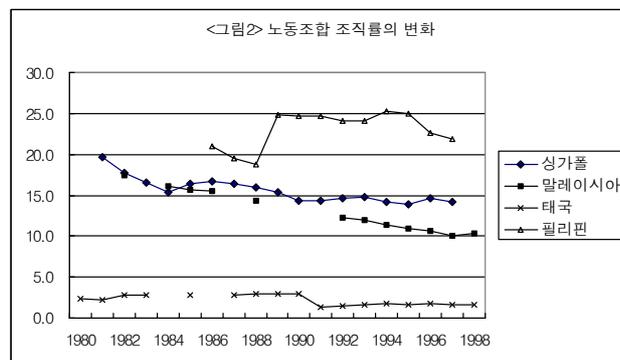
12) 고발건수가 1994년 24건이던 것이 1998년에는 3건까지 감소하였다.(Aminuddin 1999, pp.47-9) 1990년 설립된 일본의 Yano 전자는 23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3세 아동 1명을 고용하여 기소되었다. 이것이 1966년 제정된 아동고용법으로 대기업이 법정까지 간 첫 사건이다. (D'Cruz 2000, pp.122-4)

4.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1) 노조조직률

분석 대상국들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를 통하여 국제화가 결사의 자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그림2>에서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원수를 비농림어업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¹³⁾. 노조조직률을 구하려면 조합원수와 피용자수가 파악되어야하나 연도별로 이러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 한계가 있지만 추세는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사용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노조조직률이 하락하였다. 타일랜드는 조직률이 아주 낮아서 1980년 2.3%에서 1990년 3.0%까지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노조조직이 금지됨으로써 1991년 다시 1.4%로 낮아졌고 98년에는 1.7%까지 다소 상승하였다. 필리핀은 1986년 21.0%에서 1988년 18.8%까지 하락했으나 1989년 24.8%, 1994년 25.2%까지 상승한 후 1997년 다시 21.9%로 하락하였다. 분석대상국들 중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가장 제약이 많았던 인도네시아는 1982, 85년 조직률이 10.9%, 10.6% 이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조직률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하고 가입율이 높은 광업과 제조업 노동자의 감소, 국제화 심화에 따른 경쟁 격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증가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홍성우 1997). 분석대상국들도 1980년대 중반 민주혁명을 경험한 필리핀을 제외하면 국제화가 심화된 기간동안 전세계적인 노조조직률 하락경향과 마찬가지로 조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국제화가 결사의 자유를 개선하여 노조조직률을 높였다고 하기 어렵다.



13) 노동조합원수는 勞動大臣官房國際勞動課編(각년도),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IMF(1999.6)의 자료이다.

(2) 노사관계의 변화

이제 각국의 노동법을 비롯한 노사관계제도 변화를 통하여 국제화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¹⁴⁾

① 싱가포르

1967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수출지향적 산업화정책이 시행된 싱가폴은 여당인 국민행동당(PAP) 주도하에 친정부적인 전국노동조합총연맹(NTUC)을 1959년 설립하고 노조등록에 대한 행정부의 권리강화, 강제조정과 중재를 통한 파업 제한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미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다시 단체협상의 폭을 축소함으로써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켰다.¹⁵⁾

1966년 승진, 배치전환, 고용 및 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의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¹⁶⁾, 최저 단체협약 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시킴으로써 교섭권을 제한하였다. 1972년 노사정 합의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NWC)를 구성하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왔고, 임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NWC의 권고를 받아들여므로 실제 임금교섭 폭을 제한한 셈이다. 이러한 틀은 신축적 임금체제가 강화되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싱가폴의 외자유치를 위한 노동기준 약화는 다른 부문에서도 확인된다. 1968년 고용법은 기준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44시간으로 연장시키고, 공식휴일을 연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켰으며, 휴식·병가·연가를 줄이고,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킴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1984년 고용법은 여러 조항을

14) 경제발전이 낮고 민주화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법 개선이 곧 노동자 인권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관행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15) 싱가포르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Chew and Chew(1994), Yun(1998), Wilkinson(1994) 참조함. NTUC 지도부는 PAP 지도자들로서 완전고용 목표달성을 위해 임금인상 억제 정책에 협조하였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철저한 노동통제정책이 실시되어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1980년부터 1998년간 1986년 단 1건의 파업이 있었다.

16) ILO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EACR: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의 ILO 제98호 협약에 관한 이행관찰에서 전출과 해고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계속 지적되어왔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중재법원이 고용법 규정보다 양호한 고용조건을 가진 신설기업의 단체협약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지만 거부된 적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법률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ILO 2001a).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재량을 증대시켰다. 예를 들면 12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의 최대 간격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싱가포르의 국제화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 및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70년대 초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였고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시도하였으며, 80년대 초에는 중공업 수입대체를 위해 외자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했다. 이미 노조등록과정에서의 통제, 중재에 의한 자유로운 단체교섭 제한, 산업평화를 위한 행동규약, 채용·해고·배치전환 등에 대한 교섭금지 등을 통해 노조의 활동이 제약되어있는 상태에서 1977-80년간 외자증대 캠페인을 하면서 주요산업 수출부문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노동법을 완화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파업요건을 강화하고 선도산업과 수출가공지역에서 노동법을 면제하였으며 선도산업 노조조직 금지를 무한으로 연장하여 전자산업은 140개 중 1개만 노조가 존재하였다. 또한 5년간 신설기업이 최저수준 이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수출부문 제조업에서 체계적인 노동법규가 강화되고 정부개입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노조 승인신청에서 기각이 증가하였고, 분규해결에 정부가 개입하고,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고, 공공부문 파업권 일부적용을 제외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Look East 정책에 의해 일본의 노사관계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1989년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를 정부가 유도하였다.

노조가 취약하여 1996년 476건의 분규 중 77%가 단체교섭 거부 때문에 발생했으며, 단체교섭이 노동력의 10%에만 적용됨으로써 노조부문의 임금인상률이 낮고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였다.

17) 말레이시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Ali(1998), Arudsothy and Littler(1993), Arudsothy and Kuruvilla(1994), Ayadurai(1993)를 참고함.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는 ILO 제98호 협약에 관한 이행관찰에서 진출, 해고, 복직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점,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휴일, 연가 등을 단체교섭에서 제외한 점, 공무원 단체교섭권 등이 지적되었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ILO 2001a).

③ 타일랜드

타일랜드는 1956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되고 노동3권이 인정되었으나 1958년 군사구테타로 결사와 파업이 금지되었다. 1965년 단체교섭과 파업이 인정되었으나 노조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다. 1972,3년 민주화운동의 결과 1975년 민간정부에 의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어 노조, 단체교섭권 등이 인정되었다.¹⁸⁾

외자유치 환경으로 산업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타일랜드는 1972년부터 1982년까지 7개의 노사정 단체를 만들었고 성과를 거두었다.¹⁹⁾ 노동자 대표는 선출이 아니라 지명되며, 대표파견과 관련한 전국노동조직간의 경쟁으로 노동측은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사관계위원회는 항상 타협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없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뿐이다. 또한 1970년대 중반 만들어진 노사관계 틀에서 타일랜드 노조는 약하고 분산된 형태를 갖게 되었다.²⁰⁾ 조합원이 10인 이상이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였고 15개 이상 노조가 전국조직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한 기업에 복수노조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노조등록기간 중 조직지도자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을 해고시켜 설립을 봉쇄할 수 있다. 공식적인 연대행위는 정치개입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으며 노조의 활동영역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었는데 그것도 공공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른 저임금국가로 이동하자 1991년 2월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조직노동자의 활동은 국가안보의 문제로 취급되었고 전국평화유지위원회(NPKC)령 54호와 1991년 개정된 법은 민간부문과 공기업 노동자의 단결된 활동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기업 노동자를 1975년 노동관계법에서 분리하여 노조조직을 금지시켰다.²¹⁾ 조직

18) 타일랜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Piriyarangsan and Poonpanich(1994), Ogena and Rojnkuressatien(1998), Pruksakasemsuk(1999), 한국노동연구원(1994b) 등을 참고하였다.

19) 1972년 임금위원회, 노동자보상기금위원회, 1975년 노사관계위원회, 1976년 노동발전국가자문위원회, 1980년 노동재판소, 1982년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직업안전기준위원회가 곧 그것이다.

20) 1991년 현재 649개 노조의 평균조합원수는 249명이고, 그중 61%인 399개 노조가 6개 전국조직에 소속되어 전국조직 하나가 3-4만명, 작은 것은 4천명 정도로 교섭력은 극히 취약하다.

21) 이러한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해 AFL-CIO는 태국의 GSP 특혜를 제외하도록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하였으며, ICFTU, ILO 등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노동자수는 반감하였다. 또한 영 54호는 노조 자문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로 제한함으로써 외부조직과 다른 대중조직의 지지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고 파업은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대와 파업을 제한하였다.²²⁾

한편 사용자들은 노조조직을 막고, 파괴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제화로 임시계약직과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였다. 계약직은 재계약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소공장 하청기업들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노조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다. 1989-91년에 주로 나타난 현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공장을 폐쇄하여 모든 노조원을 해고시킨 후 다시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노조지도자를 해고시킨 후 잘못이 없으면 금전적으로만 보상을 하는데 이들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1997년 IMF지원 이후 급히 추진된 신노사관계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투자환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였다.²³⁾ 법35조, 36조는 노동사회복지장관이 진정되지 않은 노사분규가 국민경제, 안보 등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될 때 노사관계위원회 또는 장관이 지명된 자에게 분규를 최종 결정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섭력을 크게 제약하였다. 또한 법42조는 국가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가격인상 금지가 선포될 때 임금인상을 금지하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협상을 제한하였다.

④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80년대 중반부터 무역, 투자, 은행, 자본시장, 해운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1993년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관세와 물품세가 없는 수출자유지역이 1986년 서자바에 설치되었고 91년에는 동자바에 3곳 추가로 설치되었다.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왔다. 1968년 이후 Suharto 정권은 노동운동을 국가통제 하에 두었다. 유일하게 인정된 노조인 SPSI가 1973년 설립되었는데 정부가 지명한 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정부는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인 Pancasila에 기초하여 3자주의를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모든 분규의 조

22) 파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힘은 약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다. 파업대체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공장지역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밖에서만 허용된다.

23) 이 법은 ILO의 비난을 받았다.

정과 협상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법은 아주 대규모 공공부문, 소수의 외국 기업과 국내대기업에만 시행될 뿐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다. 90년대 초 기업협약은 해당기업 10만개 중 8천개만 비준되었다. 1990년 주요산업에서 파업을 금지하는 1963년 대통령령이 폐지되었으나, 정부는 파업이 조화를 파괴한다는 입장이어서 인력부 허가 없이 파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²⁴⁾

CEACR의 ILO 제98호 협약 이행 관찰에서 보면 반노조 차별, 사용자의 노조간섭, 단체교섭 제한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ILO 2001a) 첫째, 반노조 차별에 대해 1967년 부 결정과 1986년 부령은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전출, 강등, 반노조적인 편파적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신노동법안에는 사용자가 기업수준의 노조 및 산업수준의 연맹설립, 노조 가입 등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때는 투옥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의 노조 간섭에 대해서는 1987년 부령, 1988년 및 1992년 부 결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상세한 법률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1997년 신노동법안에도 이 부분은 내용에서 빠져있다. 정부는 1994년 1월 노사분규에 군대개입을 허용하는 법령을 폐지했으나 그후에도 개입은 계속되었다.

셋째, 단체교섭을 제한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1978년 부령에 의해 등록된 노조만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87년 부령은 노조가 반드시 연맹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20개 도(province)에 걸쳐야하고 추가요건으로 100개 지구(district), 기업들 내에서 1,000명을 넘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섭권이 제한되었다. 1994년 인력부령은 단체교섭과 협상이 가능한 공장수준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요건은 25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자 50% 이상이 설립에 찬성하여야한다. 또한 노조의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 수준에서 100명 이상, 25개 지구 이상, 5개 도에 조직이 있거나 인도네시아 전체로 1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1998년 노조등록 조건이 완화되었고 전국 수준에서 17개 노조가 등록하였지만 기업수준의 등록은 쉽지 않다. 노조등록이 거부될 이유가 많고, 노조결성 과정에서 노출된 지도자들은 해고되곤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전국수준에서 정책이 변화하여 노조조직 공간을 열어두려 한다. 그러나 관료들은 아직도 부패하여 사용자와 야합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는 예전과 달리 국민과 외국에 대해 좋은 이미

24) 인도네시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Manning(1996), 한국노동연구원(1994c),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 Leggart(1998)을 참고하였다.

지를 확립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노조를 포함한 어떤 대중조직도 강력해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수준은 열어두고 풀뿌리 수준은 그 실현을 방해한다.

인도네시아는 1998, 99년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ILO 협약에 모두 비준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고를 조장하거나,²⁵⁾ 아직도 군대와 경찰이 분규에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결사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고 있었던 나라로 국제적인 압력은 90년대말 국내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인도네시아 노동자인권 향상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ILO는 독립적인 노조의 탄압,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제한, 군대의 위협적 사용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 1994년 국제자유노련은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은 GSP 갱신과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였고 1997년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공장노조의 증가를 인정하지만 많은 노조가 어용노조라고 주장하였다.

⑤ 필리핀

필리핀은 1970년대초 수출가공지역이 설립되었으나 수출지향산업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수입대체단계에는 국내시장이 보호되기 때문에 상품시장이 주로 국내기업간의 경쟁이고 일반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다. 수출지향적으로 산업화 정책이 바뀌고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시장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한다. 그때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이나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특히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심하게 나타난다. 필리핀은 수입대체공업화 단계에 다원적 노사관계제도를 가졌으나 1단계 수출지향공업화단계에는 억압적 노사관계제도를 갖게 되었다(Kuruvilla 1994). 1972년부터 1980년까지 계엄령 하에서 새로운 헌법과 노동관련법의 수차례 개정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인정되었으나 강제중재제도가 도입되는 등 실제로는 자유로운 단체교섭이 제한되었고, 정부 피고용자는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파업은 금지되었으나 1976년 비필수분야에서만 엄격한 법적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되었다.²⁶⁾

19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였다. 전국노조로는 KMU가 설립

25) 노사분규를 해고로 해결하라고 인력부 내부 회람을 하기도 하였다.

26) 필리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Jimenez(1993), 박영범외(1994a), Sardana(1998) 등을 참조하였다.

되어 친정부적인 TUCP의 독주를 저지하였고 1970년대 무과업지역인 Bataan 수출가 공지역에서도 과업이 발생하였다. 1984년 기업근로감독조사에 의하면 75%가 일반 노동기준을 위반하였고, 1985년 노사분규의 73%는 노동기준 위반 때문에 발생할 정도로 당시 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1986년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가 부활하면서 노동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결사의 권리에 대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업은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공무원은 단체행동이 금지되었지만 노조 결성,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9년 개정된 신 노사관계법은 비적대적 노사관계, 자발적주의, 삼자주의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Asper(1996)는 국제화에 의해 노동관계가 개별화되고 단체교섭과 근로자들의 단결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1995년 필리핀의 노동조합원은 345만명인데 단체협약적용대상은 36만 4천명에 불과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분석대상국들은 공통적으로 국제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각종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비용을 인하하는 입법을 했다. OECD(1996, p.148)에 의하면 OECD 투자자들이 비 OECD국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제한은 주요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고려요소임에 틀림없고 저개발국들은 해외직접투자유치, 이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국제화가 보다 일찍 이루어지고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결사의 자유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단체교섭은 더욱 제한되었다.²⁷⁾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국제화가 늦게 이루어졌고 아직도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타일랜드는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노조조직물이 크게 하락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독재정권 하에서 결사의 자유가 억압받았던 나라로서 이 기간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유연하고 느슨한 노동시장 때문에 실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화는 초기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알 수 없다.

27) 산업화 국가들이 비슷한 제도와 규범들을 발전시킨다는 Kerr나 Sharma 등의 수렴론은 문제점이 있다.(Frenkel and Harrod, 1995) 5개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정도가 경제발전 수준과 큰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수렴론이 들어맞지 않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국제화가 심화되었다. 이 글은 국제화과정에서 동아시아지역 5개국 노동자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네가지 핵심 노동기준을 중심으로 차별,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변화가 검토되었다. 세계화 반대운동가들의 주장이나 무역연계 주장은 국제노동기준이 강제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동기준에서 하향경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글은 노동기준별로 구분하여 노동기준 개선과 효율성 증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국제화과정에서 이들 노동기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차별과 아동노동기준개선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국제화, 이에 따른 경제발전과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증대는 효율성 증대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화 시작 이전에 크게 악화되었으며 국제화 심화과정에서 오히려 악화된 나라들이 많다. 개선된 국가도 있으나 국제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주화요구 등 다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사회조항 논의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노동기준 중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관련 노동기준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조항에 포함된다고 해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개발도상국에 강제할 경우 많은 부담을 주고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국제화와 노동자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자 인권지표로 사용된 ILO 협약비준, 여성차별,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등은 국제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 정도, 문화적 특수성,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나 이 논문은 이러한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래영·박영범·이규용(1998),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의 고용관계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 편(1998), 『국제화와 고용관계-한국의 아시아 주요 투자대상국을 중심으로』, 한국노동

연구원

- 박영범외(1994a), 『국제화시대의 아·태지역국가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범외(1994b),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 블루라운드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
- 안병영·임혁배 편(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 정성진(1999),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산업노동연구』 5(2), 한국산업노동학회, pp.1-27.
- 통계청(2000), 『APEC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 *Current Labor Conditions and Position in Indonesia: A brief notes.*
- 한국노동연구원(1994a), 『신흥경쟁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1994b), 『해외노동시리즈 - 태국』.
- 한국노동연구원(1994c), 『해외노동시리즈 - 인도네시아』.
- 한창훈(2000),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한국노동연구원.
- 홍성우(1997), “한국의 노조 조직율 하락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2), 한국산업노동학회, pp. 197-224.
- 홍성우·조담·이규용(2000), “ASEAN 4개국의 국제화와 공업화,” 『산업경제연구』 13(2), 한국산업경제학회, pp.199-223.
- 労働大臣官房國際労働課編(각년도), 『海外労働白書』.
- 大野健一(1997), 『東アジアの開発經濟學』, 有斐閣アルマ.
- ADB(1999), <http://internotes.asiandevbank.org>.
- Ali, Roslan(1998), “국제화와 말레이시아의 고용관계,” 박영범 편(1998).
- Arudsothy, P. and C.R. Littler(1993), “State Regulation and Union Fragmentation in Malaysia,” Stephen Frenkel, ed., *Organized Labor in the Asia-Pacific Region*, Ithaka: IIR Press.
- Arudsothy, P. and S. Kuruvilla(1994),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 정부의 노사관계정책과 기업단위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관행,” 박영범외 편(1994).
- Aminuddin, Maimunah(1999), *Malaysian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Law*, 3rd. ed., Malaysia, McGraw-Hill.
- Ayadurai, Dunston(1993), “Malaysia,” Deery and Richard Mitchell(1993).
- Basu, Kaushik(1999 Sept.), “Child Labor: Cause, Consequence, and Cure, with Remarks on

-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pp.1083-1119.
- Bauer, Joanne R. and Daniel A. Bell eds.(1999),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Univ. Press.
- Block, Richard N. et al.(2001), "Models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dustrial Relations* 40(2), pp.258-292.
- Chew, Soon Beng and Rosalind Chew(1994), "싱가포르 노사관계에 대한 발전전략의 영향," 박영범외 (1994a).
- Cingranelli, David L. ed.(1988), *Human rights : theory and measurement*, London, MacMillan.
- D'Cruz, M. N.(2000), *A Comprehensive Guide to Current Malaysian Labour Laws*, Malaysia: Leeds Pub.,
- Deery, Stephen and Richard Mitchell(1993), *Labo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Asia : eight country studies*, Malaysia, Longman Cheshire.
- Frankel, Jeffrey A.(2000),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NBER Working Paper 7858*.
- Freeman, Richard B. and James L. Medoff(1984), *What Do Unions Do?*, New York, Basic Books.
- Frenkel, and Jeffrey Harrod(1995), *Industrialization & labor relations : contemporary research in seven countries*, Ithca : ILR Press.
- Ghosh, Jayati(1999) "Impact of Globalization on Women: Wome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presented paper at the ESCAP regional meeting 22-24 June 1998*.
- ICFTU(1998), *The Global Market - trade unionism's greatest challenge*. (www.icftu.org)
- ILO(1997), "The ILO, standard setting and globalization - report of the Director - General -,"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5th Session.(www.ilo.org)
- ILO(1998), *Export processing zones growing steadily providing a major source of job creation*.(www.ilo.org.)
- ILO(2001a), *ILOLEX database*.
- ILO(2001b), *Labour Statistics Database*.
- IMF(1999.6),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CD)*.

- Jimenez, Ramon T.(1993), "The Philippines," Deery and Mitchell(1993).
- Kellerson, Hilary(1998), "The ILO Declaration of 1998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 challenge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7(2).
- Kuruvilla, S.(1994), "National Industrial Strategies and Firm Level IR/HR Practices: Case Studies in Malaysia and Phillipines," *Center for Advanced Human Resources Studies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Cornell Univ. Working Paper #94-07.*
- Lee, Eddy(1997), "Globalization and labour standards: a review of issu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6(2).(www.ilo.org)
- Leggart, Chris(1998), "국제화와 인도네시아의 고용관계," 박영범(1998),
- Macdonald, David(1998), "노사관계와 국제화: 아시아의 노사정에 대한 도전," 박영범(1998).
- Manning, Chris(1996), "Labor Standard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donesian Case," Joseph S. Lee ed., *Labor standards and economic development*, Taipei :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OECD(1996), *Trade, employment and labour standards: a study of core workers'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Paris, 허재준외 역, 『무역, 고용, 노동기준 - 핵심근로기준과 국제무역-』, 한국노동연구원, 1997.
- Ogena, Nimfa B. and K. Rojnkureesatien(1998), "국제화와 태국의 고용관계," 박영범(1998).
- Piriyarangsarn, Sungsidh and K. Poonpanich, "Labour institutions in an export-oriented country: A Case study of Thailand," Gerry Rodgers ed.(1994).
- Portes, Alejandro(1994) "By-Passing the Rules; The Dialectics of Labour Standards and Informalization in Less-Developed Countries," Sengenberger and Campbell eds.(1994).
- Pruksakasemsuk, Somyot(1999), *Labour Situation in Thailand 1999: Thai Workers in IMF Era*,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문.
- Rodgers Gerry ed(1994), *Workers,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Rodrik, Dani(1996), "Labor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Do They Matter and What Do We Do About Them?" in *Emerging Agenda For Global Trade: High States for Developing Countries*,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Essay No. 20.
- Sardana, Conception E.(1998), "국제화와 필리핀의 고용관계," 박영범(1998).

- Sengenberger, Werner and Duncan Campbell eds.(1994),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Tongzon, Jose L.(1998), *The Economies of Southeast Asia*, Edward Edgar.
- U.S. Department of Labor(1999), *By the Sweat & Toil of Children*, Vol. V. (<http://www.dol.gov>).
- Valticos, Nicolas(1998),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human rights: approaching the year 2000,"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7(2).
- Verma, A., T.A. Kochan and R.D. Lansbury(1995), "Lessons from the Asian Experience", Verma, A., T.A. Kochan and R.D. Lansbury eds., *Employment Relations in the Growing Asian Economies*, London : Routledge.
- Wilkinson, B.(1994), *Labour and Industry in the Asia-Pacific : Lessons from the Newly-Industrialized Countries*, Berlin : Walter de Gruyter.
- Yun, Hing Ai.(1998), "Work Diversity and Negotiation: The Case of Singapore,"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19 no. 2.(315: 345)
- UNCTAD(1995, 1997, 2000), *World Investment Report*.

<부표1> 실질임금 변화추이(제조업 월임금)

	싱가폴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1980	-	-	2,324	4,417
1981	-	622	2,457	4,287
1982	-	679	2,629	4,382
1983	-	726	2,550	4,758
1984	-	766	4,025	4,257
1985	-	825	4,084	4,098
1986	1,237	816	3,737	4,605
1987	1,272	799	-	5,195
1988	1,386	771	-	5,630
1989	1,508	775	3,792	5,803
1990	1,637	775	4,011	6,122
1991	1,761	809	4,167	6,077
1992	1,871	853	4,328	6,241
1993	1,972	880	4,347	6,050
1994	2,098	928	4,229	6,272
1995	2,231	969	4,720	6,161
1996	2,367	1,042	4,913	-
1997	2,487	1,101	5,021	-
1998	2,724	-	4,999	-
1999	2,809	-	4,619	-

주1 : 자국통화 기준

2 : 1994년 기준. 싱가폴은 1997.11-1998.10 기준.

자료: ILO, *Labour Statistics Database*, 2001.

Abstract

Globalization and Workers' Human Rights in East Asia

Seong-Woo Hong · Dam Cho · Kyu Yong Lee

The more international capital flowed among countries since mid-1980s, the more globalized the world became. We analyzed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core labor standards – discrimination, child labor, freedom of association and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 of workers in Singapore,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and Indonesia.

Proponents for linkage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o trade insist that globalization cause the race to the bottom. Developing countries have the opposite opinions against the linkage. We think that improvement of the labor standards depend upon relationship with economic efficiency. The smaller discrimination and less child labor may make the nation more efficient in the long run and come true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We found that the hypothesis is true in 5 countries. But improve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do not guarantee economic efficiency. We found that they worsened the two rights to attract the more foreign capital.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linkage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o trade. Enforcement of forced labor, child labor and discrimination may succeed without big resistance of developing countries. But it may be very difficult to enforce freedom of association and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